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결사업연도	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1.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① 소득금액 계	⑤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MIN(④, ㉔)]
②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합계액 (「기준소득금액의 80% 한도)	⑥ 해당연도지출액 손금산입액 {MIN[(④-⑤)>0, ③]}
③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해당 금액	⑦ 한도초과액 [(③-⑥)>0]
④ 한도액 {[(①-②)>0]×50%}	⑧ 소득금액 차감잔액 [(①-②-⑤-⑥-⑪)>0]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⑨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3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기 부금 해당 금액	⑪ 손금산입액 [MIN(⑨, ⑩)]
⑩ 한도액 [(⑧)×30%]	⑫ 한도초과액 [(⑨-⑩)>0]

3.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⑬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해당 금액	⑯ 해당연도지출액 손금산입 액 {MIN[(⑭-⑮)>0, ⑬]}
⑭ 한도액 [(⑧-⑪)×10%, 20%]	⑰ 한도초과액 [(⑬-⑯)>0]
⑮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MIN(⑭, ㉔)]	

4.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액

⑱ 기부금 합계액(③+⑨+⑬)	⑲ 손금산입 합계(⑥+⑪+⑯)	⑳ 한도초과액 합계(⑱-⑲)=(⑦+⑫+⑰)
------------------	------------------	-------------------------

5. 기부금 이월액 명세

사업 연도	기부금 종류	㉑기부금 코드	㉒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	㉓기공제액	㉔공제가능 잔액(㉒-㉓)	㉕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	㉖차기이월액 (㉒-㉕)
합계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200					
	「법인세법」 제24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500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200					
	「법인세법」 제24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500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200					
	「법인세법」 제24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500					

6. 해당 사업연도 기부금 지출액 명세

사업 연도	기부금 종류	㉗기부금 코드	㉘지출액 합계금액	㉙해당사업연도 손금산입액	㉚차기이월액 (㉒-㉙)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 금				
	「법인세법」 제24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 금				

작성 방법

- ①소득금액 계란: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의 ㉕기부금조정연결소득금액에서 이 서식의 ⑧기부금 합계액(③+⑨+⑬)을 합하여 적습니다. ⑩손금산입 합계(⑥+⑪+⑮)에는 그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 ③, ⑨, ⑬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의 ⑨란의 가.~다.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④한도액란: "(①-②)>0"은 ①에서 ②(「법인세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를 한도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이하에서 (A-B)>0 표시된 경우는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 ⑤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란: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법인세법」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금액을 적되, 「법인세법」 제24조제5항의 기부금 전기이월액 중 ㉕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의 합계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⑥해당연도지출액 손금산입액란: ④금액에서 ⑤금액을 뺀 금액과 ③금액 중 작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⑦한도초과액란: ③금액에서 ⑥금액을 빼서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 3.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한도액 계산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⑧소득금액 차감잔액란: ①금액에서 ②금액을 뺀 금액에서 ⑤란과 ⑥란의 손금산입액을 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⑭ 한도액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⑧소득금액 차감잔액 - ⑪)의 20%로 합니다.
 - "5. 기부금 이월액 명세"는 사업연도별로 작성합니다.
 - "6. 해당 사업연도 기부금 지출액 명세"는 기부금 종류별로 작성하며, ㉘지출액 합계금액은 기부금 종류별 합계금액으로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의 ⑨란의 가.·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 「법인세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기부금은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가능하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008호로 2018. 12. 24. 공포, 2019.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2013. 1. 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을)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연결사업연도		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

1. 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개별귀속액 계산

①기부금 종류	②기부금 코드	③연결법인명	④사업자 등록번호	⑤기부금 한도초과액	⑥기부금 지출액의 합계액	⑦해당법인 기부금지출액	⑧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⑤×⑦÷⑥)
합 계							

2. 그 밖의 기부금 손금불산입 개별귀속액 계산

⑨연결법인명	⑩사업자 등록번호	⑪그 밖의 기부금 지출액	⑫연결 전 그 밖의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⑬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손금산입)	⑭그 밖의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합 계					

3.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개별귀속액 계산

⑮기부금 종류	⑯기부금 코드	⑰연결법인명	⑱사업자 등록번호	⑲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액	⑳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합계액 (공제가능액)	㉑해당법인 한도초과 이월액 (공제가능액)	㉒한도초과 이월액손금산입 개별귀속액 (⑲×㉑÷⑳)
합 계							

4. 연결법인별 기부금 이월액 명세

㉓ 사 업 연 도	㉔기부금 종류	㉕기부금 코드	㉖연결 법인명	㉗사업자 등록번호	㉘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	㉙기공제액	㉚공제가능 잔액(㉘-㉙)	㉛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	㉜차기이월 액 (㉚-㉛)
합 계	「법인세법」 제 24 조 제 2 항 제 1 호 에 따 른 특례기부금	200	소계						
	「법인세법」 제 24 조 제 3 항 제 1 호 에 따 른 일반기부금	500	소계						
	「법인세법」 제 24 조 제 2 항 제 1 호 에 따 른 특례기부금	200	소계						
	「법인세법」 제 24 조 제 3 항 제 1 호 에 따 른 일반기부금	500	소계						
	「법인세법」 제 24 조 제 2 항 제 1 호 에 따 른 특례기부금	200	소계						
	「법인세법」 제 24 조 제 3 항 제 1 호 에 따 른 일반기부금	500	소계						
	「법인세법」 제 24 조 제 2 항 제 1 호 에 따 른 특례기부금	200	소계						
	「법인세법」 제 24 조 제 3 항 제 1 호 에 따 른 일반기부금	500	소계						

작성 방법

1. ①·⑮기부금 종류 및 ②·⑯기부금 코드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기부금 종류 및 기부금 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종류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코드	200	500

2. ③연결법인명 및 ④사업자등록번호란: 기부금을 지출한 연결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⑤기부금한도초과액란: 한도초과액이 있는 기부금별로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6서식(갑)]의 ⑦·⑰란의 해당금액과 각각 일치합니다.
4. ⑥기부금 지출액의 합계액란: 한도초과액이 있는 기부금별로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6서식(갑)]의 ③·⑬란의 해당금액과 각각 일치합니다.
5. ⑦해당법인 기부금지출액란: 해당 연결사업연도에 각 연결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액을 적으며, 각 연결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의 합계액은 ⑥기부금 지출액의 합계액과 일치합니다.
6. ⑪그 밖의 기부금 지출액란: 연결법인이 해당사업연도에 지출하고 기부금으로 계산하였으나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손금산입 대상이 아닌 기부금을 적습니다.
7. ⑫연결 전 그 밖의 기부금 손금불산입액란: ⑪그 밖의 기부금 지출액란의 금액 중 연결법인이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한 그 밖의 기부금을 적습니다.
8. ⑬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손금산입) 및 ⑭그 밖의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 ⑫연결 전 그 밖의 기부금 손금불산입액란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9. ⑰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액란: ⑳해당사업연도손금추인액란의 기부금 종류별 합계액 및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6서식(갑)]"의 ㉑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란의 기부금 종류별 합계액과 일치합니다.
10. ㉒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합계액란: ㉓공제가능잔액란의 기부금 종류별 합계액(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기부금한도초과 공제가능 잔액 제외) 및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6서식(갑)]"의 ㉔공제가능잔액란(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기부금한도초과 공제가능 잔액 제외)의 기부금 종류별 합계액과 일치합니다.
11. ㉕해당법인 한도초과이월액란: 기부금 종류별로 각 연결법인의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중 공제가능액 [기부금 종류별 각 연결법인의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6서식(갑)]"의 ㉔공제가능잔액(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기부금한도초과 공제가능 잔액 제외)의 연결법인별 합계금액]을 적습니다(합계액은 ㉒란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12. "4. 연결법인별 기부금이월액 명세"는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6서식(갑)]"의 "5. 기부금 이월액 명세"를 사업연도별, 연결법인별로 분류한 세부 명세입니다.